

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4. 2. 5.
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77
----------	------

2024. 2. 5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4. 1. 18.
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25.

다. 상정일자 : 2024. 1. 30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전은혜 의원

나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제2조 금연구역 정의, 제5조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가. 흡연의 정의 수정(안 제2조제1호)

나. 금연구역의 정의 추가(안 제2조제3호)

다.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추가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4. 1. 24. ~ 2024. 1. 28.) 결과: 접수된 의견 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윤선영)

□ 의안번호 제2177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은 2024년 1월 18일 전은혜 의원이 제안하여 2024년 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임

○ 본 안건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명시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제1호는 ‘흡연’이란 기존 조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규정되었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‘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’라고 수정함

- 안 제2조제3호는 신설된 내용으로 금연구역의 정의를 추가하였음

▶ ‘금연구역’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진구청장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함

- 안 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에서는

- ▶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고
- ▶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 신설하였음

□ 동 조례안 관련 타 시구 및 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,

- 서울시 자치구 관련 조례 운영 현황

-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흡연의 정의에 규정함
: 12개 자치구 (중구, 동대문구, 성북구, 노원구, 은평구 등)
- 금연구역의 정의를 규정함
: 4개 자치구 (중구, 노원구, 강동구, 송파구)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음
- 본 조례는 흡연의 정의를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확대하였음.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포함시킨 것으로 흡연정책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
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